

안전한 도시철도, 편리한 교통서비스



서울교통공사

수신자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의원발의 「지방공기업법」 개정(안) 의견조회

1. 관련근거

가.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-0264호('17.8.25.)

나. 서울특별시 공기업담당관-10743호('17.8.28.)

2. 박순자 의원이 대표발의('16.11.28.)한 「지방공기업법」 개정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의견제출서식을 참고하시어 **2017.8.31(목)**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
※ 기한내 미제출시 의견없음으로 간주

○ 법안 주요내용

감사원, 검찰·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지방공사·공단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관련 사건의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친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사의 사장 또는 이사장에게 해당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

- 붙임 : 1. 관련 공문 1부
- 2. 일부개정법률안 1부
- 3. 의견 제출서식 1부. 끝.

법무처장

수신자 가1~가51, 나1-2, 다1, 마27, 아1-3, 나1-아19, 나1-아19, 자1-자5

대리 홍주희

처장 전결 08/28
엄익철

협조자

시행 법무처-1459 (2017.08.28.)

접수

우 04806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/http://www.seoulmetro.co.kr

전화 02-6311-9087 전송 02-6311-4288 / hong1216@seoulmetro.co.kr / 대시민공개

부패 '0'의 공기업! 청렴이 우리의 경쟁력입니다. 인사 이권청탁 배격